

BRIEFING

발행일 2023. 4. 15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발행인 김영진
주소 대전 유성구 전민로 37 tel. 042-530-3500 fax. 042-530-3528

Vol. 178

2023. 4. 15



고향의 봄에 사랑의 기부를

유 병 선 책임연구위원

제도의 유래와 도입 배경

일본의 ‘고향납세제’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에서 유래한다. 2006년 일본 후쿠이현의 니시카와 지사가 저출생·고령화의 빠른 진행과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제도를 제안하였다. 그는 다수의 국민이 지방에서 태어나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혜택을 받지만 도시에서 대학 진학과 취직이 이루어져 납세가 도시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도시의 세수는 많아지고, 지방의 세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그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논의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기부하는 주민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에 비해 적은 납세로 동일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위배되고, 기부금 수입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에 과열 경쟁을 초래할 수 있고, 도시 지역에서는 세수 부족으로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총선을 앞둔 자민당의 지지를 받아 2008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2008년 도쿄도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과 지자체 간의 세수불균형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시작하여 2008년 865억 원, 2020년 7조 1,486억 원(약 83배 증가)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4년부터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특신품 등을 담례품으로 제공(유치 경쟁 과대로 2017년 4월부터 30%로 제한)하면서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2015년 소득공제 상한액 증가(10%→20%)와 고향납세 원스톱 특례제도 도입으로 이용자 수가 전년 대비 4배 증가하였고, 조세와 기부금 제도를 결합하여 세금(소득세와 주민세)의 일부를 주소지 지자체로부터 거주지 외의 지자체에 이전(조세이전)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납세자가 세금공제 대상 기부 상한액 이내에서 기부할 경우 자기부담액

2,000엔을 제외한 전액을 소득세와 개인주민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지속적인 제도의 보완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인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효과가 기대한 만큼 발생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도입 배경

이 제도가 국내에 도입되게 된 배경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비롯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대선공약이었던 고향사랑기부금제를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로드맵에 포함시켰다. 여야 모두 제도 도입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였으나 세부 사안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어 법률 제정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요 내용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 증진 사업 등에 사용하는 제도로 정의된다. 2021년 10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3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제도의 취지는 인구 유출과 재정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가 기부금을 통해 재정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모금된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활용하게 되어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사회적 취약 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기부자에게는 지역 특산물을 담례품(기부금액의 30% 이내)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고자 한다. 기부 방법은 전국 농협 창구를 이용하거나,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http://www.ilovegohyang.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고향사랑 기부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기부 주체는 개인으로 주소지 외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표 1.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기부금액	산출계산식	세액공제액
100,000원	전액	100,000원
200,000원	100,000원+(100,000×16.5%)	116,500원
1,000,000원	100,000원+(900,000×16.5%)	248,500원
5,000,000원	100,000원+(4,900,000×16.5%)	908,500원

현재는 법인의 기부는 불가하며, 강제 모집 방지를 위해 현 거주지 자체에의 기부는 제한하고 있다. 지자체가 주최·주관하는 모임에서 기부를 독려하는 행위는 제한되며, 향우회·동창회 등 출향 단체에 기부를 권유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다만 지자체는 기부금 모집을 위한 광고, 인쇄물 배부 등의 방식으로 홍보를 할 수 있다.

향후 과제

제도 시행 초기에는 홍보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현 단계에서는 지자체가 기부금 모집을 위한 효율적인 홍보 방식으로 매력있는 기부금 사용 용도를 제시하는 것과 경쟁력 있는 담례품을 제공하는 방법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력있는 기부금 사용 용도의 제시

법적·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평소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기 힘든 사업을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으로 미리 선정하고 사업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기부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의 재정 낭비를 우려하거나 기부금의 사용 용도에 동의하지 못하여 기부를 주저하던 사람들도 사업계획을 보고 기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부의 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일본에서 많이 활용된다.

대전의 경우 대전의 특성에 잘 어울리는 사업을 물색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예를 들어 근대문화거리 조성사업, 전통시장 관광자원화사업, 과학과 예술의 복합문화 조성사업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많은 자치단체는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우선 기부금 전액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일정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될 경우 기금을 활용하여 어떠한 사회적 성과를 창출했는지 공개하여 기부자들에게 만족감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사업의 성과를 기부자가 공유하여 지속적인 기부를 유인할 수 있게 된다.

경쟁력 있는 담례품 제공

현재 대전광역시의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은 다섯 개 분야의 다양한 품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2. 대전광역시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

분야	품목
농축산물	쌀, 대추방울토마토, 꿀고구마, 새송이버섯, 순애향, 멜라웨어포도, 샤인머스켓포도, 배, 오이, 표고버섯, 게르마늄쌀, 조청세트, 농촌체험, 백향과
식품	장류(된장, 고추장, 간장), 고추장만들기 키트, 수제쿠키, 기름유, 조미김, 빵 선물세트, 허브차, 전통주(청주, 석로주 등) 선물세트, 참기름 들키름 선물세트, 선식세트, 빵 선물세트, 김 선물세트
공예품	도마, 조리기구
공산품	기초화장품, 마스크 팩
관광상품	오월드(입장권, 자유이용권, 연간회원권), 대청호오백리길 입체지도, 대청호 낭만여행

위와 같이 현재의 담례품은 주로 농축산물과 식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해이기 때문에 품목 변경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대전의 과학과 문화를 상징하는 체험형 담례품 개발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전 1일 시티투어, 대덕연구단지 탐방과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체험, 뿌리공원·계족산·보문산 등 관광체험, 동춘당·박팽년 생가 등 대전전통문화유적투어, 구 충남도청·대흥동성당 등 근대문화유산투어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